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12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정준호·복기왕·김동아

박희승 · 김문수 · 윤후덕

염태영 · 이연희 · 김병주

부승찬 • 차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 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, 한국 고유의 불교·문화·예술 및 건 축사(建築史)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 찰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 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.

그런데, 전통사찰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·개축 시 「건축법」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.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) 법률 제 호
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3항 중 "제57조"를 "제51조, 제57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	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		
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	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		
률	륟		
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	제10조의3(전통사찰 내 건축물		
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①・	사용승인에 대한 특례) ①・②		
② 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	③		
심의할 때 「건축법」 제2조제			
1항제11호, 제44조, 제46조, <u>제5</u>			
<u>7조</u> ,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	제51조, 제57조		
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			
다.	,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